

# 산업체연수년제운영규정

제정 2011.08.01 1차 개정 2014.08.08  
2차 개정 2015.11.01 3차 개정 2019.02.0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산업체연수 활동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체연수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교원의 “산업체연수년”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본 대학의 수업 등 일정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체연수 및 창업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.

**제3조(연수년의 기간)** ①산업체연수년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연수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산업체연수년 기간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자격)** ①산업체연수년 수혜교원(이하 “산업체연수교원”이라 한다.)은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15.11.1., 2019.2.1.>

②산업체연수교원은 뚜렷한 산학협력 연수계획이 있는 자에 한한다.

③교무위원으로 재임중에는 산업체연수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④휴직기간은 계속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며, 휴직기간 중에는 산업체연수년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⑤산업체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복귀일로부터 3년 이상 근속하여야 산업체연수교원을 재신청 할수 있다. <개정 2019.2.1.>

**제5조(신청)** 산업체연수교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과(부)장을 경유하여 교무·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2.1.>

**제6조(선정)** ①산업체연수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교비지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수파견이 예정된 교원은 산업체연수교원으로 간주하고 산업체연수년 선정 대상에서 우선한다.

③산업체연수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제2항에 해당되는 자
2. 대학 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
3. 교원업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자
4. 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
5.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

6. 상위 직급인 자

7. 연장자

**제7조(인원)** ①산업체연수교원의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동일기간중 전체 전임교원 총수의 1/20범위 내에서 전공당 1인 이내로 한다.

②삭제 <2019.2.1.>

**제8조(산업체연수교원의 처우)** ①산업체연수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산업체연수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. 다만,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9.2.1.>

③산업체연수년 기간은 승진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 포함한다. 다만 연구기간 중의 승진은 유보된다.

**제9조(연수교원의 의무)** ①산업체연수교원은 연수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
②산업체연수년이 만료된 교원은 복귀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제재조치)** 산업체연수교원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
1.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은 면직의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 하여야 한다.

2. 제9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산업체연수교원은 산업체연수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중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강의)** ①산업체연수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 중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학과(부)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2.1.>

②산업체연수교원이 일부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책임시수의 1/3를 배정하며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2.1.>

**제12조(주관부서)** 교원산업체연수년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13조(예외규정)** 총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,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